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제 113 호
----------	---------

제출연월일 : 2009. 5 . 1 .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정이유

대형 건축물에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미술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예술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로 명시함(안 제2조)
- 나. 미술장식의 설치 신청은 건축허가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 신청 시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고, 계약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고성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구성 등을 정함(안 제9조~ 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9-247호(2009. 3. 13 ~ 2009. 3. 31)
 - 의견제출사항 없음
- 나.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제15조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라. 합 의 : 관련실과 합의됨
-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 건축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 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①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건축허가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 신청 시 군

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고성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심의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의 현상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을 미술장식으로 설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군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건축주는 미술장식을 설치한 후 작가 및 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심의 신청) 건축주는 심의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설치 미술장식 등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의 설치확인) 건축주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설치하고 설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의 관리 등) ① 건축주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장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 ①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으로 설치할 경우 그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미술장식 계약사항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 영 제12조제5항에 의해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율과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2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제9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고성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관광과장
2. 종합민원실장
3. 도시개발과장
4.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1명
5.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5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미술장식의 심의는 별표 1의 심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되 출석위원 개별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평균 점수로 판정한다.

④ 심의대상인 미술장식의 제작에 참여한 위원은 당해 미술장식의 심의회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6급)이 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계획 심의를 받은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기준

1. 심의사항 및 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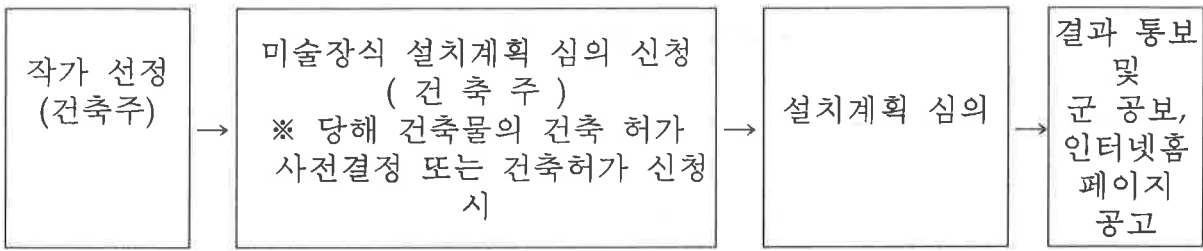
심의사항	세부 심의내용	배점	비고
계		100	
미술장식 가격의 적정성	- 미술장식 작품성과 가격의 적정성	15	
미술장식의 예술성	- 창의적 조형성 - 독창성 - 작품의 변화와 통일성	30	
미술장식과 건축물과의 조화성	- 건축물과의 자연스런 조화성 - 주변 건축 및 지역성과의 조화성 - 영구적 재료의 선정 - 설치 후의 안정성 - 작품 외적인 안정성 - 시각적인 균형성	20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 자연환경과의 조화성 - 조경환경과의 조화성 - 작품의 크기 및 규모의 적정성 - 색상 및 형상의 조화성	20	
기타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 도시미관의 기여도 - 작품 주제·내용의 고루 및 진부 여부 - 미풍양속의 저해 여부 - 제작비와 작품의 질·양의 연관성 - 지역정서 반영 여부	15	

2. 심의방법 : 점수제 (100점 만점)로 하되 심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 수로 나눈 평균 점수로 함

3. 승인기준

점수합계	판정	비고
70점 이상	승인 (원안통과)	
60점 이상 70점 미만	조건부 승인 (공개토론 결과)	
60점 미만	재심의 (부적합)	

□ 심의절차



□ 심의방법 : 점수제(100점 만점)

□ 판 정 (승인, 조건부 승인, 재심)

- 승인 : 평균70점 이상
- 조건부승인 : 평균60점 이상 70점 미만 : 공개 토론하여 조건부 승인
- 재심 : 평균60점 미만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

□ 배점기준

- 미술장식 가격의 적정성 ----- 15점
- 미술장식의 예술성 ----- 30점
- 미술장식과 건축물과의 조화성 ----- 20점
- 미술장식과 환경과의 조화성 ----- 20점
- 기타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 15점
- ※ 세부사항은 조례 [별표1] 참고

□ 구비서류

1. 미술장식 등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2. 작가경력서 1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작성)
3. 미술장식금액 산정내역서 1부.
4. 작품설명서 1부. (작품명, 규격, 재료, 작품설명 포함)
5.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도면 (A3규격 횡으로 합철) 8부.
 - 건축개요, 위치도
 - 주요현황도, 건축물 투시도
 - 미술장식품 개요, 건축물의 배치도(조경도) 또는 단면도
 - 미술장식 사진 (정면, 배면, 좌·우 측면)
 - 미술장식 도면 (정면, 배면, 좌·우 측면)
 - 미술장식과 건축물과의 조화 (근경, 원경)
 - 미술장식 설치 후 안전관리계획

※ 처리기한 30일

[별지 제2호서식]

미술장식 설치 심의서

심의기준	심 의 내 용	심의점수		비 고
		배 점	채 점	
계		100		
미술장식 가격의 적정성		15		
미술장식의 예술성		30		
미술장식과 건축물과의 조화성		20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20		
기타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15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또는인)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필증

건축개요	위 치					
	건 축 주					
	지 역 · 지 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최고높이		구 조	
	용 도		외장재료		건축종별	
	허가일자		사용검사 예 정 일		총공사비	
	건 축 설 계 자	주 소				
사무소명			성 명		전 화	
미 술 장 식 개 요	작 가 명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 가 명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 가 명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 가 액			설치(예정)일		
결정사항						
위와 같이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b style="font-size: 1.2em;">고 성 군 수 (인)						
※ 유의사항 1. 상기 미술장식은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시까지 설치 완료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기 미술장식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